

격려금 지급규정

제정 2016. 4. 1

경상북도 승인 2016. 4.27

제1조(목적) 각종 국제 및 국내대회 개최 및 참가하는 선수단의 성적거양과 유관단체의 격려를 통해 본도 체육진흥을 도모코자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조(지급대상) 1. 우리 도 출신 또는 등록된 선수나 팀
2. 각종 대회 개최 시 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운영본부 및 유관단체 임·직원
3. 본회 산하 각종 단체 및 협의회 등

제3조(지급구분) 지급구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를 포함하는 각종 국제대회
2. 대통령기 및 전국대회
3. 전국체전 등 각종 종합체육대회
4. 기타 각종 체육 행사 및 협의회 행사

제4조(격려금 지급기준) 격려금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격려금 지급기준표

(단위 : 원)

구 분	대 상	지 급 기 준	금 액	비 고	
각종국내·외대회 참가·입상격려금	지도자·선수	동·하계 국제대회 출전 (올림픽, 아시안게임, U대회)	300,000	개인별 지급	
	참가팀	국제대회 출전(기타 선수권대회 등)	300,000	단일팀 참가경우	
		전국규모 국내대회 출전(년1회)	300,000	팀 별 지급	
	지도자·선수	국제대회 입상 (올림픽)	금메달	1,000,000	※ 본회와 사전 협 의된 대회로 제 한함
			은메달	700,000	
			동메달	300,000	
		국제대회 입상 (아시안게임, U대회)	금메달	500,000	
			은메달	300,000	
			동메달	200,000	
		기타 세계대회 입상 (선수권대회 등)	금메달	300,000	
은메달			200,000		
동메달			100,000		
전국(소년) 체전 훈련장 순방격려 및 대회 현지 격려금	초·중·고·대· 일 반 부 (전종별)	개인경기	10명 이하	300,000	※ 종목당 1회 지급
		11~20명	400,000		
		21~30명	600,000		
		31~40명	900,000		
		41~70명	1,400,000		
		71~99명	2,200,000		
		100명 이상	2,500,000		
		단체경기	10명 이하	200,000	※ 예선, 준결승, 결승 진출시 팀별지급
		11~20명	300,000		
		21~30명	400,000		
※ 개인경기5인 이하는 1인 30,000원에 해당하는 격려금을 지급한다. ※ 인원대비 기준이 현저히 미달되는 격려금 지원 요인이 있을 시, 해당 위원회 심사를 통해 추가 격려할 수 있다.					
동계체전 훈련장 순방 격려 및 현지격려금	초·중·고· 대· 일 반 부	개인·단체경기	20명 이하	300,000	· 개인종목 1회 · 단체종목 (예선,준결승, 결승) 진출시 팀별지급 ※ 초등은 정식 종목 채택 후 지급
			20~30명	400,000	
		30명 이상	500,000		
각종 체육행사 격려금 (대회 운영단체, 유관기관 등)	○ 100명 이상		1,000,000	※ 경기단체 (시군체육회) 협의회 : 1,000,000	
	○ 50~99명		500,000~ 800,000		
	○ 50명 미만		100,000~ 400,000		

※ 격려금의 지급기준액은 격려금 예산범위, 경기진행 상황 등에 따라 증감 지급 할 수 있음.